

#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

 사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# 1. 예산 총칙

제1조(예산의 규모)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## ○ 예산총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금회 추경액	증감률
총 계	3,404,502	3,321,627	82,875	2.50%

## ○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금회 추경액	증감률
총 계	3,404,502	3,321,627	82,875	2.50%
사 업 수 입	868,268	867,908	360	0.04%
보조금 수입	2,513,235	2,418,760	94,475	3.91%
후원금 수입	1,500	1,000	500	50.00%
전 입 금	7,000	7,000	0	0.00%
이 월 금	14,366	26,869	△12,503	△46.53%
잡 수 입	133	90	43	47.51%

○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금회 추경액	증감률
총 계	3,404,502	3,321,627	82,875	2.50%
사 무 비	340,865	272,265	68,600	25.20%
재 산 조성비	3,000	0	3,000	-
사 업 비	3,046,641	3,042,823	3,818	0.13%
잡 지 출	113	0	113	-
예비비및기타	13,883	6,539	7,344	112.31%

제2조(예산의 내역)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센터장은 관·항·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 센터의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하며,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. ② 센터장은 관·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 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, 정산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, 위탁운영기관의 예산·회계규정을 준용한다.